

# 제146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5. 6.(수) 14:00 ~ 15:3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 해양경찰청 :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위원회담당관 등 5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3건(수정의결 2, 재상정의결 1), 보고 2건

【심의·의결 3건】

| 연번 | 형식        | 안 건 명                         | 주 요 내 용  | 심의 결과 | 부서       |
|----|-----------|-------------------------------|--|-------|----------|
| 1  | 위원회<br>예규 | 「해양경찰위원회<br>운영세칙」<br>일부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조치결과사항·조치결과) 정비<br/>※ 제12조 문구 재정비하여 추후 재상정</li> </ul>   | 재상정의결 | 위원회      |
| 2  | 고시        | 「수중레저<br>안전관리규정」<br>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중레저법」 개정·시행(26.4.23.)으로 안전관리 분야 소관*<br/>변경에 따라, 기존 해수부 고시 폐지 및 해경청 고시 제정<br/>*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li> </ul> <p><b>수정사항</b> ① 활동구역 표시 행위 주체(수중레저사업자) 명시<br/>② 조제목이 조문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br/>③ 기타 체계·자구 수정 등</p> | 수정의결  | 수상<br>레저 |
| 3  | 고시        | 「수중레저활동<br>금지구역 지정<br>고시」 제정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중레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li> </ul> <p><b>수정사항</b>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에 관한<br/>근거규정 변경(제2조제2호→제14조제1항) 등</p>  | 수정의결  |          |

【보고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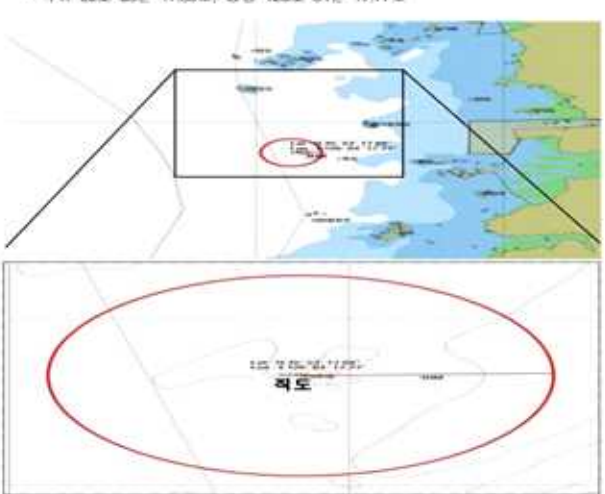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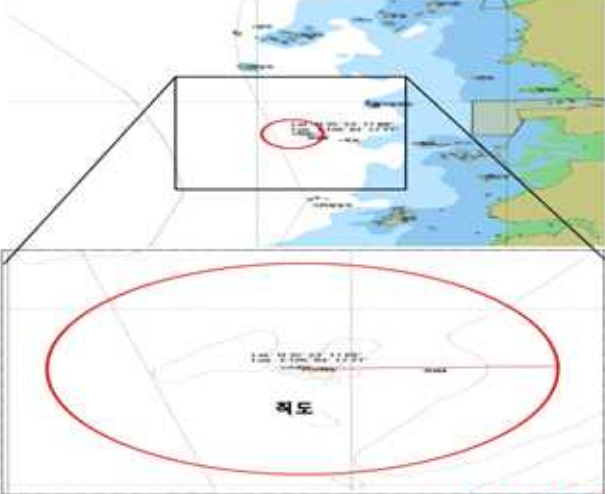
| 연번 | 안 건 명             | 부서     |
|----|-------------------|--------|
| 1  | 5월 주요 업무보고        | 기획재정   |
| 2  | 해양경찰 MDA 체계 구축 현황 | 해양영역인식 |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 상 정 안   | 수 정 의 결  |
|---|--|
|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b>법</b>"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b>제1조(목적)</b> -----<br/>----- (<del>이하</del><br/><del>"법"이라 한다</del>) -----<br/>-----<br/>-----.</p> |
| <p><b>제2조(금지구역 범위) 법 제2조제2호</b>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p>   | <p><b>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b> -----<br/>-----<br/>-----<br/>-----.</p>     |
| <p><b>수정사유</b> ①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은 '목적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므로, 제1조 약칭은 삭제 하고 제2조의 약칭은 법 전체 명칭을 사용(제1조, 제2조)<br/>② 「수중레저법」제2조제2호는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부적합하므로 제14조제1항으로 수정(제2조)</p> |  |

| 상 정 안   | 수 정 의 결  |
|---|--|
|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제2조 관련)</b></p> <p>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그림 1 참조)</p> <p>*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p>  <p style="text-align: center;">직도</p> <p>【그림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p> |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제2조 관련)</b></p> <p>1.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그림 1 참조)</p> <p>*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p>  <p style="text-align: center;">직도</p> <p>【그림 1】 전북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공군 해상사격장)</p> |
| <p><b>수정사유</b> 금지구역 지정사유 명시</p>   |  |

**□ 위원장 인사말씀**

- 미국-이란 전쟁 관련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는데, 해양경찰청이 해야할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호르무즈 해협 사태 관련, 매일 아침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선박 화재 관련 아랍에미레이트 RCC에 보호 구조 조치 협조를 요청한 상태임.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음.
-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양경찰 MDA 체계 구축 현황**

- 미국·일본에 비해 MDA 도입이 늦었는데 어떤 계기로 MDA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 MDA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함.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각 기관의 분산된 정보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05년부터 MDA 도입이 추진되었고, 일본의 경우 범국가적 해양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MDA를 추진하였음.
- '위성자산'이 없는 경우 MDA 체계의 완벽한 구축이 어려움. 해양경찰도 '19년부터 시작하여 '31년에 위성 체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그 과정에서 여러 데이터나 상업용

위성 등을 활용하여 자체 MDA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AI를 탑재하여 분석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많은 진보가 이루어져 시행착오없이 해양경찰 MDA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MDA 체계는 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선박이 어떤 것인지부터 정확히 식별해야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선박이나 시설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예방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 화상회의나 서면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해경청 방문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람.

#### □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해양경찰법」 제9조의 취지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관계기관의 성실한 응답 의무를 확보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만 보고하는 구조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보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임.

○ 기존 규정은 모든 조치결과를 보관을 전제로 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는 구조로 이해했으나 조문 순서를 바꾸면서 보고 범위가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짐.

○ 후속조치 결과를 위원회가 피드백 받는 부분 및 위원장의 보고 요구에 대한 의무규정이 생략되어서 문구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결 이후 후속 조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공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해석상 오해가 없게 개정안 문구도 재정비하도록 하겠음.

-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함. 제2항에 「해양경찰법」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과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까지 담을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주시길 바람.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 제4조에서 행위 주체를 명시할 경우 오히려 ‘무조건 정지되어야 한다’는 안전상 취지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

-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특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행위 주체 명시가 오히려 안전상 취지가 약화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와 관련해서 추후 상위법 개정 검토 시 본 규칙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 금지구역 지정은 사실상 국민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인데, 금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금지구역 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추후 전국 수중레저 활동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 있는 해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도 명확히 적시하겠음.
- 금지구역 지정은 현재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적합하나, 추가 지정은 가급적 안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함. 해경청에서도 금지구역 지정 관련하여 협의 결과가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주길 바람.

#### □ 기타 논의사항

- 중요 보고사항은 가능하면 대면회의 또는 현장방문 시 시연과 함께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회의 집중도 제고를 위해 화상회의 시 안전자료,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서 등 화면을 공유해주길 바람.